

접촉을 허용하는 접근 금지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령자나 피부양 성인과 이들이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접촉을 귀하가 막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누가 접촉을 허용하는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고령자나 피부양 성인과 이들이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 사이의 접촉을 막고 있는 경우, 아래의 사람들이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이 접촉하지 못하는 상대방, 또는
- 고령자나 피부양 성인의 보호자, 변호사, 후견인

저는 접촉을 허용하는 고령자 또는 피부양 성인 금지 명령 요청을 송달 받았습니.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귀하에게 송달된 문서를 매우 신중하게 읽으십시오. 법원 심리 통지서(양식 EA-309)는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리일 전에 양식 [EA-320, 접촉을 허용하는 고령자 및 피부양 성인 금지 명령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첨부물을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 양식 [MC-025, 첨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들은 법적 발행인이나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 (www.courts.ca.gov/form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법원이나 카운티 법률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나요?

예. 18세 이상의 사람(귀하나 사건에 연루된 사람 제외)을 통해 작성된 양식 EA-320의 사본을 본 사건의 상대방(또는 그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우편 송달”이라고 합니다)

우편으로 해당 양식을 송달하는 사람은 양식 [EA-250, 답변서 우편 송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우편을 보낸 사람이 원본에 서명하게 하십시오. 작성한 양식을 법원 서기에게 가져가거나 심리에 지참하십시오.

법원 심리에 출석해야 하나요?

예. 귀하는 양식 EA-309, 접촉을 허용하기 위한 법원 심리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판사는 귀하의 진술을 듣지 않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령의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명령의 지속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최대 5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나요?

변호사 선임은 좋은 생각이지만 필수는 아니며, 귀하는 법원이 배정하는 무료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카운티에 있는 무료 및 저비용 법률 서비스 및 셀프 헬프 센터에 관해서는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원 심리에서 명령 신청인을 대면하게 됩니까?

예. 명령 신청인이 심리에 출석할 것이라고 가정하십시오. 판사나 그 사람의 변호사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한 그 사람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법원 심리에 증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까?

예.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이나 문서를 청문회에 데려오거나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한 증인의 진술서도 소지해야 합니다. 증인의 진술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행해진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식 MC-030, 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취소하기 위해 고령자나 피부양 성인과
합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명령이 내려진 후에는 오직 판사만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법원에 명령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지역 내에서 도움을 얻으려면:

[현지 정보 기재]에 문의하십시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류를 접수할 때 서기에게 법원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양식 [INT-300 통역사 신청서 \(민사\)](#) 또는 현지 법원 양식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해 통역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통역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courts.ca.gov/selfhelp-interpreter.ht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애가 있고 법원에 있는 동안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양식 [MC-410,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MC-410-INFO, 법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방법](#)을 참조하십시오.